

[별표 1의3] <신설 2004.6.29>

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(제12조의9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처분내용
1.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	법 제19조의19 제1항제1호	등록취소
2. 법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	법 제19조의19 제1항제2호	등록취소
3. 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때	법 제19조의19 제1항제3호	영업정지 10일
4. 법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법 제19조의19 제1항제4호	등록취소
5.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가. 중상사고 2회 나. 중상사고 3회 다. 중상사고 4회	법 제19조의19 제1항제5호	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5월 등록취소
6.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괴한 때 가. 2회 나. 3회 다. 4회 이상	법 제19조의19 제1항제5호	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
7.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	법 제19조의19 제1항제6호	등록취소

비 고

- 위 표 제3호·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.
- 위 표 제5호에서 “중상사고”라 함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, 사망사고 1회는 중상사고 2회로 본다.